

전문간호사 실무경력(제4조제2항 관련)

1.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

전문간호사 자격구분	실무경력인정기관
가. 보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○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나. 마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, 회복실,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
다. 정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○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라. 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 ○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마. 감염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○ 종합병원
바.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장 의무실·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 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 ○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(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○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공단, 대한산업보건협회, 한국노동연구원, 노동건강연구소, 한국산업간호협회, 근로복지공단(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사. 응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급의료기관 ○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구급·구조대 ○ 종합병원 ○ 군병원(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)
아. 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자. 중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병원(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○ 300병상 이상의 군병원(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)
차. 호스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(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○ 종합병원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카. 종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병원 ○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(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타. 임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병원(심장·호흡기계, 소화기계, 신경·근골격계, 비뇨·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파. 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병원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 ○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시설 ○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
2. 경력인정기간 특례

위 표에서 “마. 감염관리” 및 “사. 응급” 분야의 종합병원,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%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.